

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

달성유가우체국 공고 제2017-1호

달성유가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에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(국고에의 귀속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.

다 음

1. 국고귀속일 : 2017.8.13.(일)

2. 국고귀속범위

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.

3. 국고귀속 대상 :1건

총괄국명	소속국명	보관번호	예치일자	금액
달성	달성유가	702357-92-000066	2001.03.28	20,000

4. 공고기간 : 2017. 7.14(금) ~ 2017. 8.13(일)

5. 공고장소 : 달성우체국 홈페이지(<http://www.koreapost.go.kr/kb/711>) 및 공중실

6. 환급기간 : 공고기간 내(2017. 7.14. ~ 2017. 8.13.)

7. 환급장소 : 달성유가우체국

8. 구비서류

가. 담보금 환급 청구서, 영수증(계약자 인감 날인) 1부.

나. 정부보관금수령증서(분실시 분실 확인서) 1부.

다. 사고신고인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.

라.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(법인-사업자등록증 사본, 개인-신분증 사본)

마. 위임장(사고신고인 인감 날인, 오시는 분 신분증) 1부, 인감증명서 1부

※ 구비서류 양식 : 가,나,마 양식(별도첨부)

9.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유가우체국 (053-614-2701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

2017년 7월 14일

달 성 유 가 우 체 국 장